

소장

원고 교육과학기술부장관

피고 서울특별시의회

제정조례안 의결 무효확인 청구의 소



| | | |
|---------|--------------|---|
| 소가 | 20,000,100 원 | |
| 첩부할 인지액 | 국가면제 | |
| 첩부한 인지액 | 국가면제 | |
| 송달료 | 48,320 원 | |
| 비고 | | 인 |

원고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대법원 귀중



정부법무공단
Korean Government Legal Service

137-07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685-4 서초 한샘빌딩 3~7층
Tel 02-2182-0000 Fax 02-2182-0007 www.kgls.or.kr

소장

원 고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서울 서초구 서초동 1685-4 서초한샘빌딩 5층

(전화: 02)2182-0011, 팩스: 02)2182-0097)

담당변호사 김형성, 최재정, 서규영, 이재형

피 고 서울특별시의회

서울 중구 태평로 32 서울특별시의회

제정조례안 의결 무효확인 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 피고가 2011. 12. 19.에 한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의결은 그 효력이 없다.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정부법무공단
Korean Government Legal Service

137-07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685-4 서초 한샘빌딩 3~7층
Tel 02-2182-0000 Fax 02-2182-0007 www.kgls.or.kr

청 구 원 인

1. 이 사건 제정조례안에 대한 의결 전후 경위와 그 내용

가. 제정조례안의 의결 전후의 경위

- 1) 진보성향의 교육·시민단체로 알려진 '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 서울본부'는 2011. 5. 경 서울시민 약 8만 5천명의 서명을 받아 '서울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안'을 서울특별시교육청에 제출하였습니다. 그 후 추가서명을 받아서 2011. 8. 초순경 9만 7천명의 서명으로 조례제정청구가 수리되었습니다.
- 2) 피고는 2011. 12. 19. 이 서울 학생인권조례 제정 주민발의안을 의결하였는데, 청구취지 기재 제정조례안(이하 '이 사건 조례안'이라 합니다)이 바로 그것입니다. 피고는 의결된 이 사건 조례안을 2011. 12. 20. 서울특별시교육감에게 이송하였습니다.
- 3) 서울특별시교육감은 이 사건 조례안에 대하여 원고에게 아무 보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 4) 하여간 서울특별시교육감(권한대행)은 2012. 1. 9. 이 사건 조례안의 일부내용이 법령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재의를 요구하였는데, 그러던 중 서울특별시교육감은 2012. 1. 20. 재의요구를 철회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그 즉시(2012. 1. 20.) 서울특별시교육감에게 이 사건 조례안에 대해서 재의요구를 할 것을 요청(또는 지시)하였는데, 서울특별시교육감은 이 요청(또는 지시)에 따르는 것을 거절하였습니다.



나. 이 사건 조례안의 내용

- 1) 이 사건 조례안은 학생의 인권을 보장한다는 목적으로 제정되었는데, 그 위임의 근거법령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 조례안은 제1조에서 헌법, 교육기본법 제12조, 제13조,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4,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등을 근거하고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2) 이 사건 조례안은 학생인권의 보장 원칙을 천명하면서(제3조), 그 이하에서 차별받지 않을 권리(제5조),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제6조), 학생의 학습권(제8조), 휴식권(제10조), 문화향유권(제11조), 프라이버시권(제12조, 제13조) 등등을 보장하는 내용을 두고 있습니다.

2. 이 사건 조례안의 효력 여부

가. 조례와 법령의 관계

- 1)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지만, 그 경우라도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은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합니다(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 참조). 부연하면,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에 해당하는 조례를 제정할 경우에는 그 조례의 성질을 묻지 아니하고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하고 그러한 위임 없이 제정된 조례는 효력이 없습니다(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6추52 판결 참조).



2)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치사무에 관하여 제정하는 조례가 상위 법령에 위배할 수는 없고, 상위법령에 위배한 조례는 그 효력이 없습니다(대법원 2001. 11. 27. 선고 2001추57 판결 참조).

나. 이 사건 조례안은 법률의 위임 없이 권리¹⁾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1) 이 사건 조례안은 학생에게 인권을 보장하는 것을 그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학생에게 헌법이나 법률 등에서 부여된 권리를 조례로서 확인하는 것은 조례 제정권의 허용범위와 관련하여 원칙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2) 그런데 이 사건 조례안에는 학생에게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방법으로 법률의 위임 없이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학교의 장, 교직원, 학생의 보호자, 교육감 또는 관계 공무원 등의 권리(또는 권한)를 침해·제한하거나 의무를 명시적·묵시적으로 부과하는 규정이 다수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이 사건 조례안 제9조 제4항, 제10조 제2항, 제13조 제4항, 제15조 제2항, 제4항, 제16조 제4항, 제18조 제4항, 제5항, 제19조, 제20조, 제21조 제3항, 제4항, 제23조 제2항, 제27조 제2항, 제4항, 제28조 제2항, 제5항, 제6항, 제29조 제6항, 제31조 제3항, 제4항, 제48조 제4항, 제49조 제5항 등에서는 학교장 등에게 방과 후 프로그램의 개발·운용, 휴식공간 설치, 휴대폰 소지·사용에 대한 통제 금지, 학교재정 관련 정보의 공개, 양심·종교의 자유 침해방지, 학교규칙의 제·개정 관련 학생, 학생자치조직의 참여·의견제출 보장, 학생의 학교운영 참여 보장, 학생복지에 관한 상

1) 교사의 교육권이 헌법상의 권리인지 법률상의 직무권한인지 논란이 있는데, 헌법재판소는 교사의 교육권을 학부모의 신탁과 실정법상 국가의 위임에 의한 직무권한으로 보고 있습니다(헌법재판소 1992. 11. 12. 선고 89헌마88 결정 참조).

담·지원제도의 설치운영, 학생의 청원에 대한 심사, 학생인권교육 실시 및 수강, 학생 인권옹호관의 조사 등에 대한 협조 등 일정한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교사의 교육권(교육의 자유, 교육과정 편성권) 및 설립자의 교육권(사립학교 운영의 자유)은 물론 다른 학생의 학습권 및 학부모의 교육권이 제한되거나 침해될 위험이 있습니다.

3) 따라서 이 사건 조례안 중 다수의 조항은 법률의 위임 없이 권리(또는 권한) 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효력이 없습니다.

다. 이 사건 조례안은 상위 법령에 위배됨.

1) 이 사건 조례안은 학교의 자율성, 교육의 자주성·중립성 등을 위반함

가) 관련 법령

헌법에 의하면,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되고(제31조 제4항), 학교교육을 포함한 교육제도와 그 운영, 교육과정 및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합니다(같은 조 제6항).

교육기본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을 보장하여야 하고, 지역 실정에 맞는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하며(제5조 제1항), 학교운영의 자율성은 존중되고, 교직원·학생·학부모 및 지역주민 등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운영에 참여할 수 있으며(제5조 제2항), 교육은 교육 본래의 목적에 따라 그 기능을 다하도록 운영되어야 하고, 정치적·파당적 또는 개인적 편견을 전파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어서는 아니 되며(제6조 제1항), 지방자치단체



는 사립학교를 지원·육성하여야 하며, 사립학교의 다양하고 특성 있는 설립목적을 존중하여야 합니다(제25조).

초·중등교육법에 의하면, 국립학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공·사립학교는 교육감의 각 지도·감독을 받으며(제6조), 학교의 장(학교를 설립하고자 하는 자)은 법령의 범위 안에서 지도·감독기관의 인가를 받아 학교규칙을 제정할 수 있고(제8조), 학칙에는 교과·수업일수 및 고사와 과정수료의 인정,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학생 포상, 징계, 징계 외의 지도방법 및 학교 내 교육·연구 활동 보호와 질서 유지에 관한 사항 등) 등을 기재하여야 하고(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학교의 장은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 학생자치활동의 조직 및 운영, 학칙개정절차에 관하여 학칙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학생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4항), 학생의 자치활동은 권장·보호되고, 그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학칙으로 정하며(제17조), 학교의 설립자·경영자와 학교의 장은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여야 합니다(제18조의4).

나) 이 사건 조례안의 경우

그런데 이 사건 조례안은 개별 학교가 관계법령에 따라 자율적으로 정하는 학칙에서 규정되고 있는 사항에 관하여 지도·감독의 범위를 벗어나 일률적·획일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체벌로부터 자유로운 권리(제6조 제1항, 제3항), 자신의 소질·적성·환경에 합당한 학습을 할 권리(제8조 제1항), 정규교육과정 외의 교육활동을 자유롭게 선택할 권리(제9조 제1항), 충분한 휴식시설·공간의 확보(제10조 제2항),



휴대폰 소지 및 사용금지 불가(제13조 제4항), 예산결산 등 재정관련 정보 공개(제15조 제4항), 특정 종교의 교육 강요 금지 및 대체과목 마련(제16조 제3항, 제4항), 집회의 자유(제17조 제3항), 학생자치조직·학생회의 권리(제18조 제4항, 제5항), 학칙 제·개정에 참여할 권리(제19조), 학교운영에 참여할 권리(제20조 제1항) 등의 내용 및 그 제한에 대해서는 개별학교가 상위 법령의 범위 안에서 학칙에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는 사항임에도 조례의 형식으로 초·중등교육을 실시하는 모든 학교를 예외 없이 일률적·획일적으로 규율하고 있습니다.

다) 소결

따라서 이 사건 조례안 중 학칙으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 일률적·획일적으로 규율한 사항은 개별학교의 특성을 살린 다양한 교육, 창의적인 운영, 구체적인 학교상황에서의 교육적 고려 등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감시·감독권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학교의 자율성, 교육의 자주성·중립성 등을 규정한 헌법,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등 상위 법령에 위반된다고 할 것입니다.

2) 이 사건 조례안 제6조 제1항, 제3항, 제12조 제2항, 제13조 제4항, 제16조 제3항, 제5항, 제17조 제2항, 제18조 제4항, 제5항, 제19조 제3항, 제4항, 제20조 제1항 등은 학교장, 교사 등의 권리·권한을 침해함.

가) 관련 법령

초·중등교육법 제20조 제1항에 의하면, 교장은 교무를 통할²⁾하고, 소속

2) 교무의 통할이란 학교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의사결정권을 의미하는데, 일반적으로 학교행정의 기획(학칙제정, 교무분장 등), 교수·학습(교육과정편성, 교과용도서 선정, 학생생활



교직원을 지도·감독하며, 학생을 교육합니다. 같은 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7호에 의하면, 학생 포상, 징계, 징계 외의 지도방법 및 학교 내 교육·연구 활동 보호와 질서 유지에 관한 사항 등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은 학칙의 필요적 기재사항이며, 같은 법 제18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제8항에 의하면,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때에는 법령 및 학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학생을 징계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지도할 수 있는데, 학생을 지도할 때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훈육·훈계등의 방법으로 하되,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을 사용해서는 아니 됩니다.

교육기본법 제9조 제3항에 의하면, 학교교육은 학생의 창의력 계발 및 인성 함양을 포함한 전인적 교육을 중시하여 이루어져야 하고, 같은 법 제12조 제2항에 의하면, 교육내용·교육방법·교재 및 교육시설은 학습자의 인격을 존중하고 개성을 중시하여 학습자의 능력이 최대한으로 발휘될 수 있도록 마련되어야 하고, 같은 법 제14조 제1항에 의하면, 학교교육에서 교원의 전문성은 존중되며, 초중등교육법 제20조 제4항에 의하면, 교사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교육합니다.

초·중등교육법 제31조, 제32조에 의하면, 학교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창의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국·공립 및 사립의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학교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하며,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하여 국·공립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는 이를 심의하고, 사립학교의 장은 학교법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합니다.

기록부 관리, 징계 등), 교직원 관리(인사관리, 복무관리, 연수 등), 예산·시설 및 사무 관리(예산편성, 시설관리, 문서관리 등)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나) 이 사건 조례안 제6조의 경우

위 조항에 의하면, 학생은 체벌로부터 자유로운 권리를 가지고, 학교장 및 교사는 체벌 등 모든 물리적, 언어적 폭력을 방지하여야 하는데, 학교현장에서 직접체벌이든 간접체벌이든 불문하고 모두 사라지는 것이 이상적이라는 점에는 누구나 공감할 것이지만 현실세계는 이상과 달리 체벌이 필요³⁾한 경우가 존재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7호는 2011. 3. 18. 대통령령 제22712호로 개정되면서 기존의 '학생포상 및 학생징계'에 '징계 외의 지도방법 및 학교 내 교육·연구활동 보호와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이 추가되었는바, 그 취지는 도구와 신체 등을 통한 직접체벌은 금지되지만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간접체벌 권한을 학교장 및 교사에게 보장한 것임에 비추어 볼 때, 일체의 체벌을 금지한 것은 초·중등교육법이 정한 학교장 및 교사의 학생지도권한을 침해한 것입니다.

다) 이 사건 조례안 제12조 제2항의 경우

위 조항에 의하면, 학교장 및 교사는 학생의 의사에 반하여 복장, 두발 등 용모에 대해서는 규제할 수 없고 다만 복장에 대해서만 학칙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학생의 기본권은 타인의 권리침해, 소란으로 인한 수업방해, 건강내지 위생관리의 필요성 등으로 제한될 수 있는 점, 특히 현란한 염색은 학생들의 집중력 방해로 인한 수업방해가 예상되고, 염색이 피부 및 시력에 미치는 나쁜 영향으로

3)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2004. 6. 10. 선고 2001도5380판결 등), 헌법재판소(2006. 7. 27. 선고 2005헌마1189결정 등)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체벌이 예외적으로 허용된다는 취지로 판단하였습니다.



건강 내지 위생관리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점, 단정하지 못한 두발은 교육 및 인성에 나쁜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두발에 관하여 학칙으로도 규제할 수 없다는 조항은 학교장의 학칙 제정권 및 교사의 학생지도권한을 과도하게 제한하여 이를 침해하고 있습니다.

라) 나머지 이 사건 조례안의 경우

이 사건 조례안 제13조 제4항에 의하면, 학교장은 학생의 휴대폰을 비롯한 전자기기의 소지 및 사용자체를 금지하여서는 아니 되고, 다만 교육활동과 학생들의 수업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제19조에 따라 학생이 제정 및 개정에 참여한 학교규칙으로 학생의 전자기기의 사용 및 소지의 시간과 장소를 규제할 수 있습니다. 제16조 제3항에 의하면,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학교의 장 및 교사는 학생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학교의 장은 특정 종교과목의 수업을 원하지 않는 학생들을 위하여 이를 대체할 과목을 마련해야 합니다. 제18조 제4항, 제5항에 의하면 학생자치조직은 그 활동에 필요한 예산, 공간, 비품을 제공받을 수 있는 권리 등을, 학생회는 납부금 징수, 성금, 모금, 학교생활, 학생복지 등에 관련한 정보를 제공받고 의견을 밝힐 수 있는 권리 등을 가집니다. 제19조 제3항, 제4항에 의하면 학교운영위원회는 학생 또는 학생자치조직이 학칙 등 학교규정의 제·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제출하였을 경우 학교규칙소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하고, 학교규칙소위원회는 학생자치조직의 요구가 있거나 학교규정의 제·개정안에 제12조(개성을 실현할 권리), 제13조(사생활의 자유), 제17조(의사표현의 자유)에서 보장하는 학생의 권리를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 때에는 반드시 전체 학생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학내 공청회를 거쳐 그 결과를 반영하여야 합니다. 제20조 제1항에 의하면, 학생은 학교의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가집니다.



위 각 규정들은 권리의 내용이나 실현 수단이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초·중등교육법에서 정한 학교장의 학교운영권·학칙제정권, 학생이 강제로 배정되지 않는 종교계 사립학교의 종교교육의 자유는 물론 국·공립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권한, 사립학교 법인의 학교운영위원회 자문요청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침해하고 있습니다.

마) 소결

따라서 이 사건 조례안 제6조 제1항, 제3항, 제12조 제2항, 제13조 제4항, 제16조 제3항, 제5항, 제17조 제2항, 제18조 제4항, 제5항, 제19조 제3항, 제4항, 제20조 제1항 등은 관계 법령에서 정한 학교장, 교사, 학교운영위원회, 사립학교 법인 등의 권리·권한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침해하고 있습니다.

라. 이 사건 조례안에서 보이는 그 밖의 문제점

1) 이 사건 조례안 제5조 제1항

위 조항은 학생에게 임신 또는 출산, 성적(性的) 지향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는데, 그 중 성적(性的) 지향에 관한 문제는 서울특별시교육청 생활지도정책자문위원회의 공청회에서 발표한 시안에서도 논란 끝에 제외되었던 규정입니다. 이 조항은 성(性)에 관한 가치관이 확립되지 않은 청소년에게 그릇된 성(性) 인식을 심어줄 우려가 매우 큽니다.

2) 이 사건 조례안 제17조 제3항



위 조항은 학생에게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데, 이는 선례인 경기도나 광주광역시의 학생인권조례의 제정과정에서 논란이 되었다가 문제가 심각하다는 우려로 채택되지 않았던 부분입니다.

교육과 무관한 정치적 사안에 대하여 특정 이념에 따라 학생들의 집회·시위가 주도될 경우 학교가 혼란에 빠지거나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되거나 교사의 수업권을 크게 약화시킬 우려가 있는바, 교육영역의 본질적인 가치가 훼손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이 사건 조례안에는 학교 밖의 집회·시위의 자유의 제한에 관한 내용이 전혀 없는바, 학생들이 정치·사회적 사안에 대한 집회·시위에 참여할 경우 학교장이나 교사는 학생들을 통제할 아무런 수단도 없습니다.

3) 이 사건 조례안 제20조 제1항, 제33조, 제34조, 제38조, 제42조, 제43조

이 사건 조례안 제20조 제1항에 의하면, 학생은 서울특별시교육청의 교육정책 결정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고, 제33조에 의하면 학생인권 증진 및 인권 친화적 교육문화 형성에 관한 중요 정책과 교육현장의 인권침해 사안에 대한 구제방안을 심의하고, 학생인권에 관한 지역사회의 공론을 형성하고 협력을 이끌어 내기 위하여 학생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합니다)를 두며, 제34조에 의하면 교육감은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사람 1명 이상 등 14명 이상을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하며, 제38조에 의하면 교육감은 상임의 계약직공무원인 학생인권옹호관 1명을 학생인권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하고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학생인권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해촉할 수 있으며, 학생인권옹호관은 학생인권과 관련된 직무를 독립적으로 수행



하여야 하고, 제42조에 의하면 학생인권옹호관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학생인권옹호관을 장으로 하는 학생인권교육센터를 서울특별시교육청에 두며, 제43조에 의하면 교육감은 조례나 정책을 입안할 경우 학생인권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검토를 요청하여야 하고, 위원회는 교육감이 특별한 사유 없이 학생인권영향평가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추진 중인 조례나 정책 등이 학생인권의 보장에 반한다고 판단할 경우 이의 개선 또는 중단을 권고할 수 있고, 교육감은 위원회의 권고를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합니다.

위 각 규정들은 설치근거가 분명하지 않지만 집행기관인 교육감에 속하는 학생인권위원회, 학생인권옹호관, 학생인권교육센터 등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독립적으로 직무를 수행하게 하고 그 구성에 지방의회가 사전·사후적으로 적극 관여하며, 조례나 정책을 입안할 경우 학생인권영향평가서를 작성하게 하고 일정한 경우 위원회의 권고를 따라야 하는 등 교육감의 인사권과 정책결정권을 제한한 것은 지방자치법이 정한 의결기관과 집행기관 사이의 권한분리 및 배분의 취지에 위반됩니다.

4) 이 사건 조례안 제48조 제1항

위 조항에 의하면 학생인권옹호관은 학생인권침해 구제신청이 있는 경우 피해당사자의 동의를 얻어 조사하되 사안이 중대하거나 향후 유사사건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조사를 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피해당사자의 동의 없이 조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학생인권옹호관이 피해당사자의 동의가 없는 경우에도 재량으로 학생인권침해사건을 조사할 수 있는 것은 그 취지와 달리 오히려 피해당사자의 인권을 침해



할 위험이 있습니다.

마. 학생의 의무에 대한 규정의 부존재

1) 교육정책 변화 과정의 부작용

종전에는 교육당사자 중 국가의 교육권만이 교육의 중요 정책과정에서 일방적이고 권위주의적으로 작용하였고, 학교영역에서는 교사가 주도적 역할을 하고 학생은 종속적 지위에 있었으며 학부모도 제도권 밖에서 자식의 교육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교육개혁의 일환으로 열린교육과 학습자 중심의 혁신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학습자가 중심개념으로 강조되고 상대적으로 교사의 교육권이 등한시되고 있는바, 교육현장의 교사들은 학생지도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무력감마저 느끼고 있습니다. 다양한 학생들의 한없는 요구를 대화, 설득, 학생에 대한 믿음 등 교육적 방법으로 대응하는 데는 현실적 한계가 있으며, ‘교권 상실’, ‘교육현장의 사기저하’, ‘학교붕괴’라는 우려도 낳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육현장에서 가장 시급한 것은 교사의 전문성 향상과 자주적인 교육권의 보장과 함께 학생의 기본권에 대한 인식과 동시에 학생이 지켜야 할 의무의 준수를 교육하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2) 학생의 기본권과 그 제한(의무)

학생도 기본권의 주체성이 인정되나 기본권행사의 경우에는 학생의 정신적 ·



육체적 미성숙에 기인한 보호의 필요성과 수업방해의 예방, 교내질서유지 등 학교의 특수성이 반드시 고려되어야 합니다.

학생에게도 헌법상 기본권이 보장되지만 학생은 학교에서 공동생활에 필요한 규범을 배우는 지위에 있고, 미성숙하여 쉽게 설득당하는 대상이며 충동적인 성향이 있어 보호가 필요하므로,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는 기본권 제한이 불가피합니다.

교육기본법 제12조 제1항에서도 “학생을 포함한 학습자의 기본적 인권은 학교 교육 또는 사회교육의 과정에서 존중되고 보호된다.”고 규정하여 학생의 기본권을 보장하면서 한편으로 같은 조 제3항에서는 “학생은 학습자로서의 윤리의식을 확립하고, 학교의 규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교원의 교육·연구활동을 방해하거나 학내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소결

우리 교육영역에서 오랫동안 학생의 기본적 인권이 무시되는 측면이 있었지만 최근에는 그 반대로 지나치게 학생의 자유와 권리만 강조하는 경향이 있는바, 다른 학생에 대한 강요 금지, 수업방해를 야기하는 소란행위 금지, 학교의 기본질서유지, 학칙의 준수 등 학생의 의무도 권리와 함께 교육되고 강조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조례안에는 학생의 권리만 규정하고 있을 뿐 의무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습니다.

3. 이 사건 소의 적법성

가. 문제의 소재



1)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하 '교육자치법'이라 합니다) 제3조는 교육자치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법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지방자치법 제28조에 의하면 서울특별시교육감은 이 사건 조례안을 이송받은 때로부터 5일 내에 원고에게 보고하여야 함에도(서울특별시교육감은 2011. 12. 20. 이 사건 조례안을 이송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불구하고 원고에게는 아무 보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 조례안에 관하여 원고가 파악하고 있는 것은 스스로 입수한 정보와 언론기사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서울특별시교육감은 2011. 12. 20. 이 사건 조례안을 이송받았으므로 그로부터 20일 내에 재의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교육감은 2011. 12. 20.로부터 20일이 되는 2012. 1. 9. 이 사건 조례안에 대하여 재의요구를 하였습니다. 원고는 앞서 본 것처럼 이 사건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받지 못하였는데, 서울특별시교육감이 재의요구를 할 것이라는 정보가 있어서 기다리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3) 원고는 이후 피고의 재의결 절차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괴노현 서울특별시교육감이 업무에 복귀하면서 2012. 1. 20. 갑자기 재의요구를 철회하였습니다. 원고는 이러한 재의요구의 철회가 허용되는지에 대하여 의문⁴⁾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이하에서는

4) 교육감의 재의요구는 권한이자 의무인 점, 상급감독관청인 원고가 교육감에게 이송된 조례안에 대하여 재의요구를 하도록 요청하면 교육감은 재의를 요구하여야 하는 의무를 부담하는 점, 이에 따라 교육감이 조례안에 대한 재의를 요구한 경우 조례안은 지방의회의 재의결을 거쳐야만 확정될 수 있는 점, 교육감이 일단 재의를 하였다가 의결사항을 이송받은 날부터 20일이 경과한 이후 철회할 경우 원고는 재의요청권한을 행사할 기회조차 없게 되므로 상급감독관청의 권한을 침해하게 되는 점, 철회를 인정할 경우 해석을 통하여 출소기간을 연장하여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는 점, 철회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지

일단 그것이 허용된다는 전제에서 논의를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교육감의 재의요구 철회에 대하여 원고는 2012. 1. 20. 서울특별시 교육감에게 재차 재의요구를 할 것을 요청(또는 지시)하였으나만, 서울특별시교육감은 이 요청(또는 지시)에 따르지 않겠다는 취지로 거절하였습니다.

4) 원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조례안이 헌법, 지방자치법,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등을 위반하였다는 사유로 지방자치법 제172조 제7항에 따라 이 사건 조례안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게 되었는바, 이에 대하여 아마도 피고는 제소기간의 도과를 주장할 것으로 생각되기에 아래에서는 그 적법성을 미리 정리하고자 합니다.

나. 제소기간에 관하여

1) 서울특별시교육감의 재의요구 철회로 인하여 종전 재의요구는 처음부터 없는 것과 같게 되어 원고는 재의요구가 철회된 2012. 1. 20. 즉시 서울특별시교육감에게 법령위반을 이유로 재의요구를 요청하였는데, 서울특별시교육감은 이 지시를 불이행(거부)하였습니다. 이는 결국 지방자치법 제172조 제7항의 ‘재의요구지시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의를 요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준하는 경우로 볼 수 있으므로, 원고는 직접 제소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 이 경우 제소기간은 지방자치법 제172조 제6항에서 원고의 독자적인 제소기간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교육감)의 제소기간 경과

방의회의 재의결과정에서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는 사유로 부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등 정치적 해결방법도 가능하지만, 철회가 인정될 경우 법령위반의 사유만으로 소송 절차에서 의결을 시정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교육감은 재의요구를 철회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일로부터 7일로 규정한 취지에 비추어 서울특별시교육감에 의한 재의요구 철회의 효력 발생을 안 날로부터 7일 이내로 봄이 상당합니다(대법원 2002. 5. 31. 선고 2001추88 판결 참조).

2) 위와 같은 법해석은 실질적으로 재의요구를 하였다가 철회한 경우에는 재의요구일부터 철회한 날(또는 철회사실을 안 날)까지는 제소기간의 산정에 있어서 산입하지 못한다는 의미입니다. 이와 같이 해석하지 아니한다면, 이 사건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서울특별시교육감이 지방의회로부터 조례안을 이송받아서 재의요구를 하였다가 이송일부터 20일이 지난 후에 철회할 경우 피고의 재의요구 요청권 또는 조례안 의결에 대한 무효확인을 구하는 독자적 제소권은 원천적으로 봉쇄되거나 박탈되는 것을 인정하는 결과에 이르게 되는바, 이러한 결과는 적법한 행정을 확보하기 위한 지방자치법 제172조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3) 그렇다면 원고는 최소한 2012. 1. 20.로부터 7일 내인 2012. 1. 27.까지는 대법원에 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소는 적법합니다.

4. 결론

가. 원고는 이 사건 소의 제소기간을 준수하였습니다.

나. 이 사건 조례안의 일부는 헌법, 지방자치법,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등을 위반하였으므로, 이 사건 조례안 전부는 그 효력이 없습니다.

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원고는 청구취지와 같은 재판을 구합니다.



입 증 방 법

| | |
|--------------|-----------------------------------|
| 1. 갑 제1호증 |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서울특별시조례 제5247호) |
| 1. 갑 제2호증의 1 | 부의안건(재의요구안) 철회 요청 |
| 1. 2 |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안 재의요구안 |
| 1. 갑 제3호증 |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안재의요구 요청 공문 |

첨 부 서 류

| | |
|----------------------|------|
| 1. 위 입증방법 | 각 3부 |
| 1. 소장부본 | 2부 |
| 1. 소송위임장 및 담당변호사 지정서 | 각 1부 |
| 1. 송달료납부서 | 1부 |

2012. 1.

원고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김형성

담당변호사 최재정



정부법무공단
Korean Government Legal Service

137-07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685-4 서초 한샘빌딩 3~7층
Tel 02-2182-0000 Fax 02-2182-0007 www.kgls.or.kr

담당변호사 서규영



담당변호사 이재형



대 법 원 귀 중



정부법무공단
Korean Government Legal Service

137-07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685-4 서초 한샘빌딩 3~7층
Tel 02-2182-0000 Fax 02-2182-0007 www.kgls.or.kr

자 치 법 규

[조례]

◆ 서울특별시조례 제5247호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교육감 팍 노 현 ⑨

2012년 1월 26일

갑
제
|
호
증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민국헌법」, 「교육기본법」 제12조 및 제13조,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4 및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 근거하여 학생의 인권을 보장함으로써 모든 학생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며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이루어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서울특별시 내에 소재한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를 말한다.
2. "유치원"이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라 설립·운영되는 학교를 말한다.
3. "학생"이란 제1호 및 제2호의 학교와 유치원에 학적을 둔 사람을 말한다.
4. "교직원"이란 「초·중등교육법」 제19조제1항의 교원 및 같은 조 제2항의 직원과 「유아교육법」 제20조제1항의 교원 및 같은 조 제2항의 직원을 말한다.
5. "보호자"란 친권자나 후견인, 그 밖에 학생을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6. "학생인권"이란 「대한민국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등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권리 중 학생에게 적용될 수 있는 모든 권리를 말한다.

제3조(학생인권의 보장 원칙) ①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학생인권은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행복을 추구하기 위하여 반드시 보장되어야 하는 기본적인 권리이며, 교육과 학예를 비롯한 모든 학교생활에서 최우선적으로 그리고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

- ② 학생의 인권은 이 조례에 열거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시되어서는 아니 된다.
- ③ 학칙 등 학교 규정은 학생인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제한할 수 없다.

제4조(책무) ①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집행하고 정책을 수립할 경우 학생인권을 실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학교의 장, 교직원, 보호자 등은 학생의 인권을 존중·보호·실현하고 학생의 인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③ 교육감 및 학교의 장은 학생의 학습권과 교사의 수업권 보장을 위하여 대책을 마련하고 그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 ④ 교육감,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학생의 인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여야 한다.
- ⑤ 학생은 인권을 학습하고 자신의 인권을 스스로 보호하며, 교사 및 다른 학생 등 다른 사람의 인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⑥ 학생은 학교의 교육에 협력하고 학생의 참여 하에 정해진 학교 규범을 존중하여야 한다.

제2장 학생인권

제1절 차별받지 않을 권리

제5조(차별받지 않을 권리) ① 학생은 성별, 종교,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출신국가, 출신민족, 언어, 장애, 용모 등 신체조건,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또는 가족상황, 인종, 경제적 지위,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병력, 징계, 성적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②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제1항에 예시한 사유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2절 폭력 및 위험으로부터의 자유

제6조(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① 학생은 체벌, 따돌림, 집단괴롭힘, 성폭력 등 모든 물리적 및 언어적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가진다.

② 학생은 특정 집단이나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편견에 기초한 정보를 의도적으로 누설하는 행위나 모욕, 괴롭힘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가진다.

③ 교육감,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체벌, 따돌림, 집단괴롭힘, 성폭력 등 모든 물리적 및 언어적 폭력을 방지하여야 한다.

제7조(위험으로부터의 안전) ① 교육감,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학생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체계를 정비하고 유지하여야 한다.

② 학교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신속하게 피해자를 구조하고, 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계기관 및 지역주민과 협력하여야 한다.

제3절 교육에 관한 권리

제8조(학습에 관한 권리) ① 학생은 자신의 소질과 적성 및 환경에 합당한 학습을 할 권리를 가진다.

② 교육감,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학생의 특성에 따른 다양하고 효율적인 교육, 상담, 둘봄의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실천함으로써 학생의 학습권이 충실히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특성화 고등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현장실습 과정에서 학생의 안전과 학습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④ 교육감,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장애학생(일시적 장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다문화가정 학생, 이주민가정 학생을 비롯한 외국인 학생, 예체능학생, 학습곤란을 겪는 학생 등의 학습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⑤ 학생은 다른 학생과 비교되지 않고 정당하게 평가받을 권리(평가권)를 가진다. 교육감 및 학교의 장은 학생들을 과도하게 경쟁시켜 학생들의 학습권 및 휴식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⑥ 학교의 장, 교직원은 과도한 선형학습을 실시하거나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정규교육과정 이외의 교육활동의 자유) ① 학생은 자율학습, 방과 후 학교 등 정규교육과정 외의 교육활동을 자유롭게 선택할 권리를 가진다.

② 학교는 교육과정을 자의적으로 운영하거나 학생에게 임의적인 교내·외 행사에 참여하도록 강요해서는 아니 된다.

③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학생의사에 반하여 학생에게 자율학습, 방과 후 학교 등을 강제해서는 아니 되며, 정규교육과정 이외의 교육활동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④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방과 후 학교 등 정규교육과정 이외의 교육활동에서 학생의 의견을 수렴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운용함으로써 학생의 실질적인 선택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휴식권) ① 학생은 건강하고 개성 있는 자아의 형성·발달을 위하여 과중한 학습 부담에서 벗어나 적절한 휴식을 누릴 권리(휴식권)를 가진다.

② 학교의 장은 학생의 휴식을 누릴 권리(휴식권)를 보장하기 위하여 충분한 휴식시간과 휴식공간을 확보해야 한다.

③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학생의사에 반하여 정규교육과정 이외의 교육활동을 강요함으로써 학생의 휴식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교육감은 학생의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정규교육과정 이외의 교육활동을 제한할 수 있다.

제11조(문화활동을 향유할 권리) ① 학생은 다양한 문화활동을 누릴 권리(문화활동권)를 가진다.

② 학생은 건강한 문화를 형성하고 누리기 위하여 행재정적 지원을 받을 권리(문화활동권)를 가진다.

③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학생의 다양한 문화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학생의 의견을 수렴하고, 교육, 공연, 전시 등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을 개발·운용할 수 있다.

④ 교육감은 제3항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학교 및 지역 사회의 관계기관과 협조체계를 만들어야 한다.

제4절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정보의 권리

제12조(개성을 실현할 권리) ① 학생은 복장, 두발 등 용모에 있어서 자신의 개성을 실현할 권리를 갖는다.

②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학생의 의사에 반하여 복장, 두발 등 용모에 대해 규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복장에 대해서는 학교규칙으로 제한할 수 있다.

제13조(사생활의 자유) ① 학생은 소지품과 사적 기록물, 사적 공간, 사적 관계 등 사생활의 자유와 비밀이 침해되거나 감시받지 않을 권리(이하 “사생활의 자유”라 한다)를 가진다.

② 교직원은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을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가 아니면 학생의 동의 없이 소지품을 검사하거나 압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불가피하게 학생의 소지품 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최소한의 범위로 한정되어야 하며, 불특정 다수의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일괄 검사 또는 검사의 목적물을 소지하고 있을 것이라는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검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교직원은 학생의 동의 없이 일기장이나 개인수첩 등 학생의 사적인 기록물을 열람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④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학생의 휴대폰을 비롯한 전자기기의 소지 및 사용 자체를 금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교육활동과 학생들의 수업권을 보장하기 위해 제19조에 따라 학생이 그 제정 및 개정에 참여한 학교규칙으로 학생의 전자기기의 사용 및 소지의 시간과 장소를 규제할 수 있다.

⑤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다른 방법으로는 안전을 관리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학교 내에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을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설치 여부나 설치 장소에 관하여 미리 학생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여야 하며, 설치 후에는 설치장소를 누구나 쉽게 알 수 있게 표시하여야 한다.

⑥ 학생은 자기가 원하는 인간관계를 형성하고 그 관계를 존중받을 권리(이하 “인간관계의 존중”라 한다)를 가진다.

제14조(개인정보를 보호받을 권리) ① 학생은 가족, 교우관계, 성적, 병력, 징계기록, 교육비 미납사실, 상담기록, 성적지향 등의 개인 정보(이하 “개인정보”라 한다)를 보호받을 권리(이하 “개인정보의 보호”라 한다)를 가진다.

②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학생에게 교외에서의 이름표 착용을 강요해서는 아니 된다.

③ 교육감,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학생의 개인정보를 수집·처리·관리할 경우에 적법하고 적정한 수단과 절차에 따라야 한다. 교육활동과 관련 없는 학생 또는 보호자의 개인정보를 조사하거나 확인해서는 아니 된다.

④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학생에 관한 개인정보를 본인의 동의 없이 공개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누구든지 학생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는 개인정보를 알게 된 경우에는 이를 함부로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조(개인정보를 열람할 권리 등) ① 학생 또는 보호자는 학생 본인에 관한 학교 기록 등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고, 그 정정이나 삭제, 혹은 개인정보의 처리정지를 요구할 권리(이하 “개인정보의 열람”라 한다)를 가진다.

②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학생에 관한 개인정보로써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를 파기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학생의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한다.

1. 부정확한 경우

2. 교육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경우

3. 정보수집의 목적이 달성되어 더 이상 보유할 필요가 없게 된 경우

4. 그 내용이 학생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그러할 우려가 있는 경우

5. 그 밖에 개인정보를 보유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는 경우

③ 학생은 학교에 대해 학생에게 영향을 미치는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이하 “개인정보의 청구”라 한다)를 가진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개인정보 보호법」,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절차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④ 학교의 장은 예·결산 등 학교 재정 관련 정보를 학생이 쉽게 알 수 있는 내용과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제5절 양심·종교의 자유 및 표현의 자유

제16조(양심·종교의 자유) ① 학생은 세계관, 인생관 또는 가치적·윤리적 판단 등 양심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②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학생에게 양심에 반하는 내용의 반성, 서약 등 진술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학생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학생에게 예배·법회 등 종교적 행사의 참여나 기도·참선 등 종교적 행위를 강요하는 행위

2. 학생에게 특정 종교과목의 수강을 강요하는 행위

3. 종교과목에 대하여 과제물의 부과나 시험을 실시하여 대체과목 선택을 방해하는 행위

4. 특정 종교를 믿거나 믿지 아니한다는 등의 이유로 학생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는 등의 차별 행위

5. 학생의 종교 선전을 제한하는 행위

6. 특정 종교를 비방하거나 선전하여 학생에게 종교적 편견을 일으키는 행위

7. 종교와 무관한 과목 시간 중 특정 종교를 반복적, 장시간 언급하는 행위

④ 학교의 장은 교직원이 제2항 및 제3항을 위반하지 않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⑤ 학교의 장은 특정 종교과목의 수업을 원하지 않는 학생들을 위하여 이를 대체할 과목을 마련해야 한다.

제17조(의사 표현의 자유) ① 학생은 다양한 수단을 통하여 자유롭게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고 그 의견을 존중받을 권리(권리를 가진다).

② 학생은 서명이나 설문조사 등을 통하여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모을 권리(권리를 가진다).

③ 학생은 집회의 자유를 가진다. 다만, 학교 내의 집회에 대해서는 학습권과 안전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학교규정으로 시간, 장소, 방법을 제한할 수 있다.

④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학생이 표현의 자유를 행사하는 경우 이를 지도·감독할 수 있다. 다만, 부당하고 자의적인 간섭이나 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교지 등 학생 언론활동,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등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 이에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절 자치 및 참여의 권리

제18조(자치활동의 권리) ① 학생은 동아리, 학생회 및 그 밖에 학생자치조직의 구성, 소집, 운영, 활동 등 자치적인 활동을 할 권리(권리를 가진다).

②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학생자치조직의 구성과 소집 및 운영 등 학생자치활동의 자율과 독립을

보장하고 학생자치활동에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성적, 징계기록 등을 이유로 학생자치조직의 구성원 자격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며, 학생자치조직의 대표는 보통, 평등, 직접, 비밀 선거에 의해 선출되어야 한다.

④ 학생자치조직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

1. 학생자치활동에 필요한 예산과 공간, 비품을 제공받을 권리

2. 학교운영, 학교규칙 등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할 권리

3. 학생자치조직이 주관하는 행사를 자유롭게 개최할 수 있는 권리

⑤ 학생회는 학생 대표 기구로서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

1. 학생회에서 함께 일할 임원을 선출할 권리

2. 학생총회, 대의원회의를 비롯한 각종 회의를 소집하고 개최할 수 있는 권리

3. 납부금 징수, 성금 모금, 학교생활, 학생복지 등에 관련한 정보를 제공받고 의견을 밝힐 수 있는 권리

4. 학생회 예산안과 결산에 대해 심사·의결할 수 있는 권리

5. 학생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한 학생회 의결 사항을 학교의 장 및 학교운영위원회에 전달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들을 권리

6. 다른 학교 학생회나 단체들과 연합하여 정보와 경험을 교류하고 활동 내용을 협의할 권리

7. 학생회를 담당할 교사를 추천할 권리

⑥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부당하게 학생 자치활동을 금지·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며,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 등을 위하여 일시적인 제한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한 사유의 사전 통지, 소명기회의 보장, 학생자치조직의 의견 수렴 등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제19조(학칙 등 학교규정의 제·개정에 참여할 권리) ① 학생은 학칙 등 학교 규정의 제·개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② 학생 또는 학생자치조직은 학칙 등 학교 규정의 제·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 학교운영위원회는 제2항의 의견이 제출되었을 경우에는 학교규칙소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④ 학교규칙소위원회는 설문조사, 토론회, 공청회 등의 방법으로 전체 학생을 비롯한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진행하여 그 결과를 반영해야 한다. 다만 학생자치조직의 요구가 있거나 학교규정의 제·개정안에 제12조, 제13조 및 제17조에서 보장하는 학생의 권리를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 때에는 반드시 전체 학생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학내 공청회를 거쳐 그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⑤ 학교의 장 및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 규정 제·개정에 대한 심의절차에 학생자치조직의 의견 제출권을 보장해야 하며 학생의 인권을 존중·보호·실현하는 방향으로 학칙 등 학교 규정을 제·개정하여야 한다.

제20조(정책결정에 참여할 권리) ① 학생은 학교의 운영 및 서울특별시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의 교육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② 학생회 등 학생자치조직 및 학생들의 자발적 결사는 학생의 권리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밝힐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③ 학교의 장과 교직원은 학생대표와의 면담 등을 통하여 정기적으로 학생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노

력하여야 한다.

④ 학생대표는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⑤ 교육감,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학생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결정할 경우 학생의 참여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제7절 복지에 관한 권리

제21조(학교복지에 관한 권리) ① 학생은 학습부진, 폭력피해, 가정위기, 비행일탈 등의 각종 위기상황 극복과 적성발견, 진로모색 등 정체성 발달을 위하여 학교에서 상담 등의 적절한 지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교육감,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및 학교의 장은 빈곤 학생, 장애 학생, 다문화가정 학생, 외국인 학생, 성소수자 학생, 균로학생 등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사유로 권리 실현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배려하는 데에 우선적으로 예산 등의 지원을 배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및 학교의 장은 학생이 사회복지에 관한 권리를 향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상담을 제공하고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지원 제도를 수립 또는 정비하여야 한다.

④ 교육감,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및 학교의 장은 특별한 상담 및 돌봄이 필요한 학생을 위하여 아동복지 및 인권과 관련된 지역 사회의 관계기관과 협조체계를 구축하여야 하며, 특히 보호자를 교육하고 보호자의 참여와 협력을 유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운용하여야 한다.

제22조(교육환경에 대한 권리) ① 학생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교육감,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적정한 양과 질의 도서 및 도서관 공간 확보, 청결한 환경의 유지, 화장실과 적절한 탈의 및 휴식공간의 확보, 적절한 냉난방 관리, 녹지공간 확대 등 최적의 교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3조(급식에 대한 권리) ① 학생은 안전한 먹을거리에 의한 급식을 제공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학교의 장은 급식재료, 급식업체 등 급식 관련 정보를 학생에게 제공하고 정기적으로 급식에 관한 의견조사를 실시하며 그 결과를 급식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 학교의 장은 친환경 농산물에 기초한 급식을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교육감은 의무교육과정에서의 직영급식과 무상급식을 실시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4조(건강에 관한 권리) ① 학생은 최적의 건강상태를 유지하고, 아플 때 적정한 치료를 받고 보건 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② 여학생은 생리로 인한 고통 때문에 결석하거나 수업에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 그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을 권리(생리권)를 가지며,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생리 중에 있는 여학생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적절한 배려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 및 학교의 장은 학교보건사업을 실시하는데 있어 학생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학생의 선택권을 존중하여야 한다.

④ 교육감 및 학교의 장은 학생이 아플 때 이용할 수 있는 보건실의 시설 및 기구를 충분히 확보하

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절 징계 등 절차에서의 권리

- 제25조(징계 등 절차에서의 권리) ① 학생에 대한 징계는 징계사유에 대한 사전 통지, 공정한 심의기구의 구성, 소명기회의 보장, 대리인 선임권 보장, 재심요청권의 보장 등 인권의 기준에 부합하는 정당한 규정과 적법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 ②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징계와 그 전후의 절차에서 징계대상 학생의 회복과 복귀를 목표로 하여야 하며, 그것을 위하여 지역사회, 보호자 등과 협력하여야 한다.
- ③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피징계자를 식별할 수 있는 표현이나 방법을 사용하여 징계내용을 공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④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상벌점제를 포함한 학생에 대한 지도방법의 결정 및 그 집행의 절차에서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9절 권리침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 제26조(권리를 지킬 권리) 학생은 인권을 옹호하고 자기나 다른 사람의 인권을 지키기 위한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그 행사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 제27조(상담 및 조사 등 청구권) ① 학생을 비롯하여 누구든지 학생인권이 침해당했을 경우에는 학생인권옹호관에게 상담 및 조사 등을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 ② 학생을 비롯하여 누구든지 학생인권 관련 사항에 관하여 학교의 장, 교육청, 지역교육청 그 밖의 관계기관에 문서 등으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
- ③ 학생을 비롯하여 누구든지 제1항과 제2항의 청구권 및 청원권 행사에 관하여 비밀을 보장받으며, 그 행사로 인하여 불합리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 ④ 학생인권옹호관은 제1항의 청구에 대하여 교육감 및 학교의 장 등은 제2항의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지며, 그 처리결과를 청구 및 청원한 사람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절 소수자 학생의 권리 보장

- 제28조(소수자 학생의 권리 보장) ① 교육감,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빈곤 학생, 장애 학생, 한부모가정 학생, 다문화가정 학생, 외국인 학생, 운동선수, 성소수자, 근로 학생 등 소수자 학생(이하 “소수자 학생”이라 한다)이 그 특성에 따라 요청되는 권리의 보장을 하여야 한다.
- ② 교육감,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사회구조나 문화에 따라 누구나 권리 실현에 어려움을 겪는 소수자 학생이 될 수 있음에 유념하면서 소수자에 대한 편견과 차별의식을 해소하는 데 필요한 인권 교육프로그램과 소수자 학생을 위한 진로 및 취업 프로그램, 상담프로그램을 별도로 마련하여야 한다.
- ③ 교육감은 소수자 학생에 대하여 그 특성에 따라 요청되는 권리의 보장을 위하여 전문 상담 등의 적절한 지원 및 조력을 하여야 한다.

- ④ 교육감,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장애 학생에 대하여 교내외 교육활동에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고 참여를 보장하여야 하며, 장애 유형 및 정도에 따라 적절한 교육 및 평가방법을 제공하여야 한다.
- ⑤ 교육감,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빈곤 학생이 가정형편으로 말미암아 수학여행 등 교육활동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⑥ 다문화가정 학생, 이주민가정 학생을 비롯한 외국인 학생의 인권은 당사자 또는 보호자의 체류 자격과 무관하게 보호되어야 한다. 교육감,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다문화가정 학생, 이주민가정 학생을 비롯한 외국인 학생에 대하여 교육활동에서 언어·문화적 차이 등으로 인한 차별 없이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시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전입학 기회가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⑦ 교육감,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다문화가정 학생, 이주민가정 학생을 비롯한 외국인 학생 등에 대하여 그의 문화적 정체성을 학습하고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 그에 적합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⑧ 교육감,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학생의 성적지향과 성별 정체성에 관한 정보나 상담 내용 등을 본인의 동의 없이 다른 사람(보호자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게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학생의 안전상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도 본인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제3장 학생인권 증진을 위한 체계

제1절 학생인권교육과 홍보

- 제29조(학생인권교육) ① 교육감,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모든 사람의 학생인권 의식을 깨우치고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학생인권교육을 하여야 한다.
- ② 학생인권옹호관은 학생인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생인권교육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학생인권옹호관은 학생인권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교육감,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학교의 장 및 교직원 등과 협의할 수 있다.
- ③ 교육감은 학생인권옹호관의 학생인권교육업무 수행을 위한 지원 체제를 갖추어야 한다.
- ④ 교육감은 학생인권교육을 위하여 교육자료 및 교육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여야 한다.
- ⑤ 교육감은 필요한 경우 학생인권교육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학생인권옹호관에게 위임할 수 있다.
- ⑥ 학교의 장은 학생들에게 학생인권에 관한 교육을 학기당 2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 ⑦ 학교의 장은 제6항에서 정한 교육을 실시할 경우에는 산업수요맞춤형 고등학교 및 특성화 고등학교 현장실습, 근로 학생의 증가 등을 고려하여 노동권에 관한 내용을 포함시켜야 한다.
- ⑧ 학교의 장은 학생 스스로 행하는 자율적인 인권학습활동을 보장하고 이를 지원하여야 한다.

- 제30조(홍보) ① 교육감은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의 내용과 이 조례의 내용 등 학생인권에 관한 일반인용과 중·고등학생용, 초등학생용, 유치원생용 설명서 및 교육용 교재를 제작·배포하는 등 홍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② 교육감은 학교의 장으로 하여금 학교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매년 가정통신문의 형태로 발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보호자 및 학생에게 이 조례 전문을 알려야 한다.
- ③ 학생인권옹호관은 제29조제2항의 학생인권교육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할 경우 학생인권 홍보

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 제31조(교직원 및 보호자에 대한 인권교육) ① 교육감은 교육청 주관의 모든 자격연수에서 학생인권에 관한 교육 내용을 연 2시간 이상 편성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교육청 주관의 교직원 직무 연수에 학생인권에 관한 교육 내용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학교의 장은 교직원에 대하여 연 2시간 이상 학생인권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학교의 장은 학생의 보호자에 대하여 학생의 인권에 관한 교육 또는 간담회를 연 1회 이상 추진하여야 한다.

- 제32조(서울특별시 학생인권의 날) ① 교육감은 학생인권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의 날」을 지정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의 날」의 취지에 어울리는 사업을 실시하고, 학생, 교직원 및 시민의 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

제2절 학생인권위원회와 학생참여단

- 제33조(학생인권위원회) ① 교육청의 학생인권 증진 및 인권 친화적 교육문화 형성에 관한 중요 정책과 교육현장의 인권 침해 사안에 대한 구제방안을 심의하고, 학생인권에 관한 지역사회의 공론을 형성하고 협력을 이끌어 내기 위하여 학생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학생인권종합계획 수립에 대한 심의 및 결과에 대한 평가
 2. 학생인권종합계획의 연도별 시행 계획에 대한 자문 및 결과에 대한 개선 권고
 3. 학생인권이 중대하게 침해되어 특별한 구제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정책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안에 대한 학생인권옹호관의 조사결과의 심의 및 구제 조치 권고
 4. 교육감의 교육정책 및 입법 활동에 대한 학생인권영향평가 및 개선 권고
 5. 학생인권에 영향을 미치는 제반 입법, 정책, 교육활동 및 기타 사회활동에 대한 의견 표명
 6. 학생인권에 대한 지역사회 여론 형성을 위한 토론회 등의 공론화 활동
 7. 학생인권 현황에 대한 연례 보고서 등 연구·조사 보고서의 발간
 8. 이 조례에서 정한 교육규칙의 제정에 관한 자문
 9. 학생인권지원센터의 활동에 관한 평가
 10. 그 밖에 교육감, 학생인권옹호관 또는 위원회 위원 3명 이상이 제안한 사안에 대한 심의
- ③ 위원회는 제2항의 업무 수행에 있어 교육감 또는 학생인권옹호관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회의에 출석하여 의원의 질의에 답변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학생인권 정책에 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 제34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임한다.

- ② 위원회는 인권에 관하여 올바른 관점을 가지고 있으며, 소수자들이 겪는 차별문제에 대하여 높은 감수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위원으로 한다.
-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제2항의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교육감이 위촉한다.
1. 교육, 아동복지, 청소년, 의료, 법률, 인권 전문가로서 관련 비영리민간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또는 공개모집절차를 통해 신청을 받은 사람 5명 이상
 2. 학생참여단에서 위원회 위원으로 선출된 사람 2명 이상
 3. 시민 중에서 학생인권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고, 참여의지가 있는 사람으로 공개모집절차를 통해 신청을 받은 사람
 4. 교육청의 학생인권 관련 담당 공무원으로 교육감이 임명하는 사람 2명 이상
 5. 교원 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2명 이상
 6. 학부모 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2명 이상
 7.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사람 1명 이상
- ④ 위원회의 위원은 특정성별이 3분의 2를 넘어서는 아니 된다.
-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⑥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⑦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하여야 한다.
1.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해당하는 사람
 2. 본인이 희망하여 사임서를 제출한 사람
 3.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여 위원회 활동에 부적당하다고 위원회가 인정하는 사람

제35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

1. 정기회 : 연 4회 이상

2. 임시회 : 교육감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동수일 경우에 위원장이 결정한다.

④ 위원회는 그 업무 중 일부를 수행하기 위해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소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 중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위촉한다.

⑤ 위원회의 간사는 제34조제3항제4호의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 1명이 담당한다.

⑥ 학생인권옹호관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그 업무와 관련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⑦ 위원회의 모든 회의는 공개하며, 반드시 그 회의록을 작성하여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사안의 성격상 공개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거나 관련자들의 인격권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의결로써 회의를 비공개로 하거나 회의록의 열람을 제한할 수 있다.

⑧ 위원회의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6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학생인권위원회 및 소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학생인권위원회가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37조(학생참여단) ① 교육감은 학생인권 증진 및 인권친화적 교육 문화 조성을 위한 정책 수립에서 학생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학생참여단(이하 "참여단"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참여단은 10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참여단은 공개모집을 통하여 모집한 학생들 중에서 추첨을 통하여 선발한다. 다만, 참여단의 구성을 다양하게 하고 소수자 학생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하여 20명 이내의 범위 내에서 별도의 절차를 밟아 교육감이 위촉할 수 있다.

④ 참여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교육감의 교육정책에 대한 의견 제시
2.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의 개정에 관한 의견 제시
3. 학생인권실태조사에 관한 의견 제시
4. 학생인권실천계획에 관한 의견 제시
5. 학생인권옹호관의 조사 및 그 권고에 대한 의견 제시
6.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의 날」 자치행사 주관
7. 학교규칙을 포함한 제반 학교규율에 대한 의견 제시
8. 그 밖의 학생인권 증진 및 학생참여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

⑤ 교육감은 지역교육청별로 참여단을 둘 수 있다.

제3절 학생인권옹호관

제38조(학생인권옹호관의 설치) ① 교육감은 학생인권 증진 및 인권 친화적 교육문화 조성의 업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교육청에 학생인권옹호관 1명을 둔다.

② 학생인권옹호관은 인권에 대한 올바른 관점과 차별에 대한 높은 감수성을 가지고 있으며, 학생 인권에 관한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교육감이 임명한다.

③ 학생인권옹호관은 상임의 계약직공무원으로 한다.

④ 학생인권옹호관의 신분은 보장되며, 교육감은 학생인권옹호관이 아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만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해촉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위원회는 청문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 그 사실을 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동의안을 처리하여야 한다.

1. 학생인권옹호관이 학생인권 및 다른 사람의 인권을 중대하게 침해하여 더 이상 학생인권옹호관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음이 명백하게 된 경우

2. 학생인권옹호관이 금고이상의 형을 받았을 경우

⑤ 학생인권옹호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⑥ 학생인권옹호관은 학생인권에 대한 「대한민국헌법」과 관련 법령 그리고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을 비롯한 국제인권규범의 정신에 따라 그 직무를 독립적으로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제39조(학생인권옹호관의 직무) 학생인권옹호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학생인권 관련 실태조사 및 정책, 지침 등의 연구·개발
2. 학생인권침해 및 학생복지에 관한 상담
3. 학생인권침해 사안에 대한 조사 및 직권조사
4. 인권피해자에 대한 지원 프로그램 운영

5. 학생인권침해에 대한 적절한 시정 및 조치권고
6. 학생인권향상을 위한 제도 개선 권고
7. 인권교육에 대한 교재개발 등의 지원 및 정기적인 인권교육 시행
8. 학생인권위원회 및 참여단의 업무 지원
9. 학생인권위원회가 결정한 사항의 집행
10. 학생인권영향평가서 작성 지원 등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한 사항

제40조(보고의무) 학생인권옹호관은 학생인권침해사건의 처리결과를 교육감과 학생인권위원회에 매년 분기별로 보고하여야 한다.

제41조(겸직의 제한 등) ① 학생인권옹호관은 「지방공무원법」제56조에 따르며, 교육청과 특별한 이해 관계가 있는 기업이나 단체의 임원을 겸할 수 없다.
 ② 학생인권옹호관의 복무, 처우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이 없는 사항은 별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4절 학생인권교육센터와 학생인권영향평가

제42조(학생인권교육센터) ① 교육청에 학생인권옹호관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학생인권옹호관을 장으로 하는 학생인권교육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둔다.
 ② 센터는 학생인권옹호관의 지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학생인권에 관한 법령·제도·정책·관행 등의 조사와 연구 및 그 개선에 관한 사항
2. 학생인권침해사건에 대한 조사와 구제, 유형 및 판단기준, 그 예방조치 등에 관한 사항
3. 학생인권상황에 관한 실태 조사 및 정보·자료의 조사·수집·정리·분석 및 보존
4. 인권에 관한 교육 및 홍보
5. 인권의 응호와 신장을 위하여 활동하는 단체 및 개인과의 협력
6. 그 밖에 학생인권옹호관 인권의 보장과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센터에는 사무직원을 둔다.
 ④ 센터의 장은 센터의 업무를 총괄한다.
 ⑤ 학생인권옹호관은 센터의 운영과 활동을 매년 교육감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⑥ 센터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제43조(학생인권영향평가) ① 학생인권위원회는 교육감이 제정, 입안하려고 하는 조례나 정책 등이 학생의 인권 및 인권 친화적 교육문화 조성에 미치는 영향 등을 사전에 평가하고 그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조례나 정책을 입안할 경우 학생인권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교육감이 특별한 사유 없이 학생인권영향평가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추진 중인 조례나 정책 등이 학생인권의 보장에 반한다고 판단할 경우 이의 개선 또는 중단을 권고할 수 있다.
 ④ 교육감은 제3항의 위원회 권고를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5절 학생인권종합계획

제44조(학생인권종합계획의 수립) ① 교육감은 학생인권을 증진하고, 학교문화와 교육환경을 개선하는 등 인권 친화적 교육문화를 실질적으로 증진시키기 위한 종합계획(이하 “학생인권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학생인권종합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학생인권 증진 및 인권 친화적 교육문화 형성의 기본 방향
2. 제1호의 기본 방향에 따른 단계별 실천전략
3. 학생인권종합계획의 실행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4. 학생인권 관련 정기적인 조사·연구 및 인권 교육 실시 방안
5.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 지역사회의 협력과 공문화 방안
6. 교육과학기술부 및 다른 지역 교육청과의 학생인권 증진을 위한 협력 방안
7. 학생인권종합계획 실행에 대한 평가방안
8. 그 밖에 학생인권 증진 및 인권 친화적 교육문화 형성에 관한 주요 사항

제45조(연도별 시행계획 및 실태조사) ① 교육감은 학생인권종합계획을 기초로 하여 매년 연도별 시행 계획을 수립하고 평가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학생인권 관련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학생인권종합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학생인권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구체적 지침을 마련하여 각 학교에 제시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않는 학교의장을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④ 교육감은 제1항의 평가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46조(공청회 등) ① 교육감은 학생인권종합계획을 수립할 경우 공청회, 토론회, 지역순회 간담회 등 을 통하여 학생, 교직원, 보호자, 시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학생인권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는 시민활동을 지원하고 협조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4장 학생인권침해에 대한 구제

제47조(학생인권침해 구제신청) ① 학생이 인권을 침해당하였거나 침해당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학생을 비롯하여 누구든지 학생인권옹호관에게 그에 관한 구제신청을 할 수 있다.

② 학생인권침해 구제신청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각 지역교육청 별로 학생인권상담실을 둔다.

③ 제2항의 학생인권상담실은 학생인권에 관한 상담과 학생인권침해 구제신청의 접수를 담당하며, 그 결과를 매월 정기적으로 학생인권옹호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조속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등 시급한 경우에는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학생인권옹호관이 상담 및 조사를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신청을 수리하지 않을 수 있다.

1. 피해학생 이외의 제3자가 한 구제신청에 대하여 피해학생 본인이 조사를 원하지 않는 것이 명백한 경우

2. 구제신청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하여 법원의 재판,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그 밖의 법령에 따른 권리구제절차나 조정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종결된 경우
3. 그 밖에 구제신청이 현저하게 이유가 없거나 허위의 사실에 의거하고 있거나 인권보호 이외의 다른 목적을 위하여 이루어졌음이 명백한 경우

제48조(학생인권침해사건의 조사) ① 학생인권옹호관은 제47조제1항의 구제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인권침해를 받았다고 주장되는 당사자(이하 “피해당사자”라 한다)의 동의를 얻어 사건에 대하여 조사한다. 다만, 사안이 중대하거나 향후 유사한 사건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조사를 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학생인권옹호관은 피해당사자의 동의가 없이 조사할 수 있다.

② 학생인권옹호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교육청 및 학교 등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고, 학교의 설립자 및 경영자, 학교의 장, 교직원, 학생의 보호자, 학생 및 관계 공무원 등(이하 “관계인”이라 한다)에게 질의할 수 있다.

③ 학생인권옹호관은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방문조사를 할 수 있다.

④ 관계인은 학생인권옹호관의 자료요청 및 질의와 현장방문조사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제49조 (학생인권침해사건의 처리) ① 학생인권옹호관은 조사 중이거나 조사가 끝난 사건에 대하여 사건의 공정한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구제 조치를 당사자에게 제시하고 합의를 권고할 수 있다.

② 제47조제1항의 구제신청을 받은 학생인권옹호관은 사건을 신속하게 조사한 후 인권침해나 차별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가해자나 관계인 또는 교육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1. 학생인권침해 행위의 중지
2. 인권회복 등 필요한 구제조치
3. 인권침해에 책임이 있는 사람에 대한 주의, 인권교육, 징계 등 적절한 조치
4. 동일하거나 유사한 인권침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 ③ 학생인권옹호관은 조사의 결과 그 사안이 중대하거나 재발의 방지를 위하여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안에 대하여는 학생인권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하여 그 결과를 받아 권고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④ 학생인권옹호관이 제2항 또는 제3항의 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이를 즉시 교육감에게 통보 한다.
- ⑤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권고를 받은 가해자나 관계인 또는 교육감은 그 권고사항을 존중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그 조치결과를 가해자나 관계인은 학생인권옹호관이나 교육감에게, 교육감은 학생인권옹호관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 ⑥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권고를 받은 가해자나 관계인 또는 교육감이 권고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이유를 붙여 서면으로 학생인권옹호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⑦ 학생인권옹호관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권고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가해자나 관계인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교육감에게 권고할 수 있다.
- ⑧ 학생인권옹호관은 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관계인, 교육감 등의 조치결과 및 통보내용, 학생인권옹호관이 교육감에 대하여 한 권고 등을 공표할 수 있다.

제50조(비밀유지의무) ① 학생인권옹호관 및 학생인권교육센터의 구성원은 제48조제1항의 구제신청과 학생인권침해에 관한 조사와 관련하여 알게 된 사항에 대하여는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학생인권침해의 구제와 관련한 심의를 하면서 알게 된 사항에 대하여는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정책적인 성격이 강하여 관련된 당사자의 인격권을 침해할 우려가 없는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장 보 칙

제51조(시행규칙) 이 조례에서 구체적으로 위임한 사항과 이 조례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8조부터 제41조제1항까지는 2012년 9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41조제2항에 따라 학생인권옹호관에 관한 별도의 조례가 제정될 때까지 교육청 산하의 학생인권전문부서로 하여금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한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

1. 제정이유

학생의 인권이 학교교육과정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생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가. 차별받지 않을 권리 (제5조)
- 나.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제6조)
- 다. 정규교과 이외의 교육활동의 자유 (제9조)
- 라. 두발, 복장 자유화 등 개성을 실현할 권리 (제12조)
- 마. 소지품 검사 금지, 휴대폰 사용 자유 등 사생활의 자유 보장 (제13조)
- 바. 양심·종교의 자유 보장 (제16조)
- 사. 집회의 자유 및 학생 표현의 자유 보장 (제17조)
- 아. 소수자 학생의 권리 보장 (제28조)
- 자. 학생인권옹호관, 학생인권교육센터의 설치 등 학생인권침해 구제 (제38조, 제42조)

소통하고 배려하는 창의적인 민주 시민 육성

서울특별시교육청

수신자 서울특별시 의회사무처장(의사담당관)

(경유)

제목 부의안건(재의요구안) 철회 요청

갑
제
2
호
증
|

1. 관련 : 교육자치담당관-167(2012.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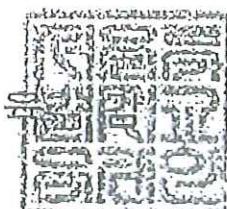
2. 2012.1.9字 서울특별시의회에 제출한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안 재의요구안」(의안번호 506번 관련)을 철회하고자 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재의요구안 철회사유

- 1) 서울특별시의회의 결정을 존중하고, 서울 학생의 인권 신장과 학생인권을 존중하는 학교문화 풍토를 조성하기 위함.
- 2) 대한민국헌법, 교육기본법 제12조 및 제13조,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4 및 「유엔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 근거한 인권 존중의 보편적 정신을 구현하기 위한 법적 장치임.

붙임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안 재의요구안"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교



주무관

안병렬

의회 법제담당사무관

신재용

교육자치담당관

접수 01/20

이규성

별주자

시행 교육자치담당관-471 (2012.01.20.) 접수 ()
우 110-780 서울특별시 종로구 송월길 28(신문로2가 2-77) / <http://www.sen.go.kr>
전화 02-3999-362 전송 02-3999-744 / an8267@sen.go.kr / 공개

『시민으로부터 신뢰받는 투명한 서울교육』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안 제의요구안

| | |
|----------|--------|
| 의안 번호 | 관련 506 |
|----------|--------|

제출년월일 : 2012년 1월 9일
제출자 : 서울특별시교육감

2011년 12월 20일자로 서울특별시의회로부터 이송되어온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안」(이하 “조례안”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이유로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28조 제1항 및 「지방자치법」 제107조 제1항에 따라 제의를 요구 합니다.

1. 「초·중등교육법」 제8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의 취지는 학교에 자율성을 부여하고 있는데, 조례로 학교규칙을 일률적으로 규제함으로써 상위법과 충돌 가능성이 있음.
2. 「헌법」 제117조 제1항, 「지방자치법」 제 22조 및 관련 판례에 의하면 지방의회는 자치사무에 관하여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 권한을 침해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만 조례를 제정할 수 있으나, 조례안은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에서 직접 정한 바도 없고 조례에 위임하고 있지도 않은 ‘학생인권위원회’, ‘학생인권옹호관’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독립적으로 직무를 수행하게 함으로써 교육감의 인사권 및 정책결정권을 제한할 소지가 있음.

3. 조례안 제17조 제3항 학생 집회의 자유는 경기도 및 광주광역시 인권조례에 논란이 되어 포함시키지 않았으나, 서울특별시 조례안은 포함하고 있음.

이는 특정 이념에 의해 학생들의 집회·시위가 주도될 경우 학교를 혼란에 빠뜨릴 수 있으며, 이로 인해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하거나 교사의 학생 교육권을 크게 약화시킬 수 있음.

4. 조례안 제5조 제1항의 입신 또는 출산, 성(性)적 지향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는 규정 중 '성(性)적 지향'은 서울특별시교육청 생활지도정책자문위원회 공청회에서 발표한 시안에도 논란 끝에 제외되었던 규정으로 성(性) 가치관이 확립되지 않은 청소년에게 그릇된 성(性) 인식을 심어줄 우려가 있음.

5. 조례안 제6조의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가진다는 규정은 모든 교육벌을 금지하는 것으로 오해될 수 있고, 조례안 제12조의 두발 자유 등 개성을 실현할 권리를 부여한 규정과 제13조의 휴대폰 소지 및 사용 자체를 금지할 수 없도록 한 규정 등은 사회적 합의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아 학교 현장에서 교원들의 교육활동에 혼선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이상과 같은 이유로 서울특별시의회가 지난 2011년 12월 19일 의결하고 12월 20일자로 이송한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안」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1항 및 「지방자치법」 제10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의회로 재의를 요구함.



함께하는 공정사회 더 큰 희망 대한민국

교육과학기술부

수신자 서울특별시교육감

(경유)

제목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안 재의요구 요청

갑 제 3 호 중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1항 및 「지방자치법」 제107조 제1항에 의거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안에 대하여 재의요구할 것을 요청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의요구 요청 이유

가. 서울특별시교육청이 2012년 1월 9일자로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안에 대하여 재의요구를 하면서, 「초중등교육법」 제8조, 「동법 시행령」 제9조의 취지는 학교에 자율성을 부여하고 있는데 조례로 학교규칙을 일률적으로 규제함으로써 상위 법령에 위배되고, 법률에서 위임되지 아니한 '학생인권위원회', '학생인권옹호관'의 설치를 의무화함으로써 교육감의 인사권 및 정책 결정권을 제한할 소지가 있으며,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하거나 교사의 교육권을 약화시킬 수 있는 집회의 자유에 관한 조항, '성적 지향' 등 그릇된 성인식을 심어 줄 수 있는 조항 등의 문제점을 그 사유로 제시하고 있는 바,

나. 이에 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미 재의요구하였음에도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철회'라는 절차를 이용하여 입법절차를 임의로 바꾸는 것은 부당하고, 재의요구 사유들이 해소되었다고 인정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발생되었다고 볼 수 없음에도 재의요구를 철회하는 것은 불가함

다. 또한,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이송된 날로부터 20일이 지난 후 철회하는 것은 법률에서 보장하고 있는 장관의 재의요구 요청권을 원천적으로 박탈하는 것임

라.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공익을 현저히 저해한다고 판단되므로 재의요구할 것을 요청함. 끝.



교육과학기술부장관

행정사무관

최민호

학교문화과장

전결 01/20

오승걸

협조자

시행 학교문화과-320

(2012. 01. 20.)

접수

우 110-760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교육과학기술부 학교지

/ www.mest.go.kr

전화 02-2100-6464

전송 02-2100-

/ minho123@mest.go.kr

/ 대국민공개

Me First, 녹색은 생활이다 !

서울 중구 태평로
32 서울특별시의회

피고

서울특별시의회 대표

 100-701
2 0 9 7 3 1 2 - 9 4 9 0 1 4 ↓
(민사과 특별2부(카))
2012-043-15-277

이 사건의 사건번호는 대법원

2012추 15 제정조례안의결 무효확인 청구의 소

예정 기일 :

담당재판부 : 특별2부(카) 법원사무관 김정태

직통 전화 : 3480-1364 팩스 :

e-mail :

재판부 이메일 주소는 문의사항을 연락하기 위한 연락처이므로 재판부 이메일 주소로 전자문서를 전송하는 경우에는 서면을 제출한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